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669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669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51530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수진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변론 종결2024. 10. 31.

판결 선고2024. 12. 5.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51530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42,150,4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50,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얻었던 점' 다음에 '④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역시 사해행위로 판단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7564호, 같은 법원 2021나87125호, 대법원 2023다286332호)'을 추가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C(F)가 341,000,000원 상당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이 있었으며,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외에도 2019. 7. 1.부터 2019. 12. 31. 사이에 455,462,139원의 매출채권과 AB에 대한 30,340,000원의 대여금채권 등 합계 866,802,139원의 적극재산이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 14, 16호증을 비롯한 피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C의 적극재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138,546,425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청구금액 42,150,415원 외에 별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53,258,952원(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7564호, 같은 법원 2021나87125호, 대법원 2023다286332호)을, 별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51,052,112원(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4478호, 같은 법원 2023나218160호, 대법원 2024다309317호 상고심 계속중)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배당이의 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경진

판사김용태

판사이수영